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종배(경향국박성중 110-734 서울시 중로구 인동동 175-87 인동빌딩 5층 전화: 723-5300 / 팩스: 723-5055
천리안-하이텔 :PSPD, 나무누리유니-털 참여연대 / 전자우편pspd@soback.kornet.nm.kr /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oreanet.org/~pspd//

수 신 각 신문사 정치부 및 사회부 담당기자
발 신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담당: 백미순간사 723-5302)
제 목 참여연대 입법청원 (인사청문회관련 국회법 개정안, 고위공직자인사위원회법등)
날 짜 1998. 2. 12. (총 5 쪽)

보 도 자 료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해, 참여연대 입법청원

고위공직자인사위원회법 입법제정안 및 국회법 개정안 제출
신정부 첫조각부터 인사청문회 반드시 실시할 것 촉구

1. 참여연대는 오늘(98.2.12)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및 '고위공직자인사위원회법' 입법제정안을 국회에 각각 청원하였다.
2. 참여연대가 제출한 이 두 개의 법안은 국무총리, 국무위원등 헌법에 의해 국회의 동의가 요구되는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의하여 인준청문회를 개최토록 하고 그 밖의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인사위원회법에 의하여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도록 하여 인사청문회 실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3. 한나라당에서 제출한 인사청문회법의 경우 국회의 동의절차가 필요치 않은 장차관 등에 대해서도 국회의 인사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헌법기관의 개입 없이 전속적인 권한으로 공무원 임명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한 헌법상의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함으로써 위헌의 소지가 있다. 따

라서 참여연대의 청원안은 국회 동의를 요하지 않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절차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과정에서 실시하도록 함으로서 위헌의 소지를 없도록 하였다

4. 최근 당선자와 여권측이 신정부 첫조각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은 전혀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참여연대는 '이번 입법청원을 통해 신정부 첫조각부터 인사청문회를 열도록 법적 강제장치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이며 '앞으로 시민캠페인을 통해 인사청문회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 고위공직자에 대해 반드시 국민적 검증절차를 거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5. 참여연대가 마련한 두 개 법안의 청원요지는 다음과 같다.

1) 국회법중개정법률안은 헌법에 의해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하는 고위공직자들에 대하여 국회가 단순히 임명동의상의 찬반만을 표결할 것이 아니라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여 해당 고위 공직자의 자질, 인격, 과거행적, 업무능력 등을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였다.

2) 고위공직자인사위원회법(안)은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장·차관등 주요 고위공직자들에 대하여 임명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청문회를 개최케 함으로써 국민의 참여를 보장토록 하고 고위공직자들의 과거 행적, 경력, 자질, 인격등에 대하여 공개적인 청문회를 통해 검증함으로써 공직의 투명성과 도덕성, 공직자의 직무 적합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 별첨자료 : 청원서

『高位公職者人事委員會法』 입법청원

1. 입법의 취지

가.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임명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청문회를 개최케 함으로써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함

나. 특히 고위공직자들의 과거 행적, 경력, 자질, 인격등에 대하여 공개적인 청문회를 통하여 검증이 가능함으로써 공직의 투명성과 도덕성, 공직자의 직무적합성을 높이도록 함

다. 국무총리, 국무위원등 헌법에 의해 국회의 동의를 요구되는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의하여 인준청문회가 개최되도록 하고 나머지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는 헌법을 개정할 수 없으므로 이 법에 의하여 청문회를 개최하도록 함

2. 법안의 골자

가. 국무총리 직속기구로서 고위공직자 청문을 위한 고위공직자인사위원회를 설치함 (제2 내지 4조)

나. 고위공직자인사위원회는 공직자인사의 기본계획의 수립과 인사청문회개최를 주요 임무로 함 (제5조)

다. 일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이 그 사안에 대하여 회피하도록 함으로써 공정성을 꾀하도록 함 (제7조)

라. 심의 내용 중에 국가기밀등 기밀사항이 있을 때에는 기밀누설금지의무를 부과함 (제8조)

3.전문(全文)

제1조 (목적) 이 법은 고위공직자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과 활동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위) 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로서 국무회의의 심의사항 가운데 고위공직자 인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민적인 검증과 합의를 도모하여 총리의 임명제청에 수렴토록 한다.

제3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 (위원장 및 위원) ① 위원장 및 위원은 시민단체, 언론인, 학계인사, 전문가 등으로 국무총리가 위촉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으로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5조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고위공직자 인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개최
3. 기타 고위공직자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6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중요한 국가안보상의 필요에 한하여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③ 고위공직자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심의는 공개청문회를 통해 진행한다.

제7조 (위원의 회피)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안건이 본인, 본인의 친족 및 친족 관계가 있었던 자와 관련이 있을 경우, 또는 업무상의 연관이 있을 경우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누설의 금지)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에서 심의사항 등 공위공직자인사에 관한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된 사항을 사사로이 누설할 수 없다.

부칙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國會法』 개정청원

1. 개정의 취지

가. 헌법에 의해 국회동의를 얻도록 하는 고위공직자들에 대하여 국회가 단순히 임명동의여부에 관하여 표결할 것이 아니라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나. 인사청문을 통하여 그 고위공직자의 자질, 인격, 과거행적, 업무능력 등이 밝혀져 검증이 가능하도록 함

다. 헌법상 국회동의를 필요한 공직자에 한정하여 인사청문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위헌시비의 소지가 없도록 함

2. 개정의 골자

가. 국회법 제46조의1 윤리특위, 제46조의2 여성특위에 이어 46조의 3으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설치함

나.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 협의하여 20명 내외의 국회의원으로 임명함

다. 인사청문의 대상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에 국한함

라. 인사청문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시민사회단체에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참고인을 소환하도록 함

3. 개정안 전문

제46조의3 ①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공직자에 관하여 청문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국회에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은 20인 내외로 구성하되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를 통해 국회의원 가운데 임명한다

③ 인사청문의 대상은 헌법상 국회의 임명동의를 요하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의 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및 대법관 등에 한한다

④ 시민사회단체에 인준이 요구된 공직후보 지명자에 대한 자료요청을 할 수 있다.

⑤ 청문의 대상이 된 자의 인격, 경력, 기타 직무적합성에 관하여 필요한 참고인을 증인으로 소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끝.